

• 본 내용은 최근 환경처가 발행한 '법령해석 질의 회신집'에서 발췌한 것임

질의 내용	회신 내용
• 연료사용량 산정방법	
가. 연소시설의 연료사용량 산정방법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시설의 연료사용량은 시설용량을 말하며, 사업장내 모든 배출시설의 연료사용량을 종합하여 당해사업장의 연료사용량으로 하며, 예비로 설치된 것이 증명된 시설은 연료사용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연간연료사용량=연료시설의 시간당 연료사용량(시설용량)×24시간 / 일 × 365일 / 년으로 산정하되, 난방용보일러 및 생산제품의 수용량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시간만 가동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연료사용량=연소시설의 시간당 연료사용량×연간사용(예정)시간 ○연간사용시간(기설치 사용중인 시설 : 최근 3년간의 평균년간 사용시간, 신규 : 사용예정시간을 정확히 산정한 시간) 연소시설의 시설용량이 연료사용량, 열량, 물의 중발량(톤/시간)등 여러종류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료사용량으로 환산하여야 함.
• 기름걸레·폐유 등 소각장의 배출시설해당여부	
가. 기름걸레, 폐유, 폐스폰지 등 소각시 환경보전법시행규칙 "며"항에 해당되는 오염물질 배출시 허가대상 여부 나. 자동차정비공장의 시간당 25kg미만인 소각시설도 공장의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p>가. 나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정비공장의 기름걸레, 폐유, 폐스폰지 등을 소각할 경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1. 차(1)의 소각시설 규격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동시설에서 동규칙 별표 2.1 "며"항에 해당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 * 1991. 2. 2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는 특정유해물질의 배출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규모이상의 시설만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p>동규정에 의하면 소각시설중 특정폐기물소각시설은 시간당 25kg이상, 일반폐기물소각시설은 시간당 100kg이상일 때만 배출시설에 해당됨.</p> <p>[참고조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p>
• 군수가 일일조업시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배출시설설치허가 권한이 시·도지사로 부터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배출시설을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의 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를 동조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는 바, 배출시설설치허가권한이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었다면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당해배출시설에 대하여 동규칙 제33조단서의 규정에 의거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만 가동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미생물배양기간중 비정상운영시의 조치	
가. 변경신고를 받아 일일 20m ³ 처리규모의 생물화학적처리방법의 폐수방지시설을 폐쇄하고 일일 200m ³ 규모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생물의 배양기간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자진신고대상인지의 여부. 또한, 미생물의 배양기간동안 부득이 비정상운영시의 조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방지시설 변경에 따라 변경신고를 득한 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면서 폐수방지시설을 증설·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첨부한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아울러 자진신고에 따른 개선기간은 통상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이 정하여 질 수 있음.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질의 응답(환경처 소음·진동업무 편람 발췌)

질의 내용	회신 내용
1. 소음·진동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던 중 소음·진동규제법이 제정 공포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되게 된 경우 방지시설 설치여부?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던 중 소음·진동규제법이 제정 공포되어, 동법 제10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면제 대상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기허가받은 사항중 방지시설 부분을 삭제하도록 관할관청에 배출시설변경신고(방지시설 설치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첨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협재확인 결과 첨부서류와 부합될 때에는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게 됨
2. 석유화학단지 등과 같이 동종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공장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 주거시설이 없을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음·진동규제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공장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주거시설 뿐만아니라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부지경계선에서 200m이내에 주거시설등이 없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데, 배출시설 허가신청시 소음에 대한 내역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지경계선에서 200m이내에 피해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토사석 채취업소에 설치된 기계·기구 및 시설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모래·자갈 등을 채굴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과 이와 관련된 보조적인 산업활동만을 하는 토사채취업소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광업:토사석 채취업) 다만,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결합되지 않은 토사석의 성형, 분쇄, 분말화, 연마 및 기타 가공처리 활동을 하는 업소(제조업: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은 배출시설에 해당됨
5. 제품보관용 냉장창고가 전국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등 특정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지의 여부?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소음·진동규제법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과 관련하여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6. 1대의 기계내에(에어콘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압축기, 송풍기)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각 기능마다 부착된 기계별로 각각 받아야 하는지 여부?	에어콘 등과 같이 1개의 상자내에 압축기, 송풍기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이 함께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기능이 되는 기계(압축기)에 한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분리형 에어콘과 같이 압축기와 송풍기가 각각 다른 위치에 분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하게 됨
7. 소음방지시설의 설치방법은?	소음방지시설은 그 기능상 소음기와 같이 소음이 배출되는 발생원에 직접 설치하는 발생원 대책과 방음벽, 방음실처럼 소음의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전파경로 대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또한 설치하는 방법도 개개의 소음발생원마다 설치하거나 여러대의 발생원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의 협조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 설치할 수 있을 것임
8. 아파트건설현장에 설치하는 레미콘 제조시설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레미콘제조시설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 사업장내에 설치된 시설이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동력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에 해당됨. 참고로 레미콘제조용 믹서, 벨트콘베어시설은 변속기에 해당됨
9. 하나의 회사가 수개의 생산공장과 부설연구소를 함께 두고 있는 경우 부설연구소로 하여금 산하 각 생산공장에 대한 소음도측정(자가측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부설연구소에서 각 생산공장에 대한 자가측정이 가능함
10. 석탄광업소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음·진동규제법상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을 말하므로 석탄을 채굴하는 산업활동만을 하는 광업소는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광업소에서 생산된 광물들의 과제, 분쇄 또는 기타 처리활동이 광업 및 채석활동과 결합되어 수행되지 않을 경우는 공장에 해당됨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정 법률 제4493호 ('91.12.31)</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지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이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p> <p>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등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의 개선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환경오염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환경오염개선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p> <p>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등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처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개선목표 분야별 환경개선사업 환경과학기술의 개발·진흥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p>제정 대통령령 제13699호 ('92.7.21)</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등이 시행하는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p> <p>② 제1항의 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사업물량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도별, 영향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p>	<p>제정 총리령 제403호 ('92.8.8)</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시·도지사(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⑤ 환경처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6조(중기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처장관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기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요청과 수정계획의 확정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 환경처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 또는 그 수정계획에 대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제2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제출절차 등) ① 환경처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시행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되,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작성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안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당해 연도의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3조(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 심의) ① 환경처장관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위원회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사업규모 및 물량 사업간의 연계성 <p>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p> <p>③ 관계기관의 장은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중기계획 등의 추진실적의 관리) 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p>	<p>제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절차 등)</p> <p>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직할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과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처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중기계획 또는 그 수정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연도별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처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양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 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양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등 기타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송유관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및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3.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에 따라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위험물 저장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관련시설 ②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이라 함은 제1항의 시설물중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물중 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시설물을 이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및 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물 2.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③ 환경처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안의 개선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금액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시설물을 이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부과대상시설물의 용도, 부과·징수의 방	④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p>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p> <p>⑤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 부담 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지역 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직할시 및 시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 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p>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 해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 담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p> <p>제6조(개선부담금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 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다만, 외국정부의 소유 에 속하는 시설물로서 당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 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 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3.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4. 종교시설 5.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의 교육용시 설물 및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 설중 학교형태의 사회교육시설 6.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 원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 병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8.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청소년전용시설 9.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의료시설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 한 의료 및 재활시설 12. 시설물의 일부가 분할소유되고 있는 경우로 서 분할소유된 시설물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그 공관원을 포함한다) 및 국제기구(그 직원을 포함한다)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다만, 외국정부(그 공관 원을 포함한다)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로서 당 해 국가가 대한민국정부(그 공관원을 포함한다) 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 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소방·청소·오물제거·환자수송·현혈·우 편 및 전파관리의 용도에 제공하는 특수구조를 가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가진 자동차로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p> <p>3.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p> <p>4. 경유에 따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 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처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p> <p>제7조(개선부담금의 경감) 별표 2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중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p> <p>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①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매반기별로 산정·부과하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는 별표3과 같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p> <p>③ 환경처장관이 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9조(개선부담금의 직권조정) ① 환경처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징수된 개선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 <p>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부과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납기·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 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는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p>	<p>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p>제5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서식) 영 제9조 제2항 및 영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서식)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징수비용의 교부) 환경처장관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개선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준에 적합한 계측기의 종류)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량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계량기 및 계량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계량기 2. 기타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계측기
②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 부과금액·대당기본부과금액·연료계수·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차령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리기록부 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시설물용도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3조(연료사용량의 환산방법)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별표5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4조(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당부과금액 및 대당기본부과금액은 기준부과금액에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부과금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연료 및 용수사용량별로 누진요율을 적용하되, 사용량별기준부과금액은 별표 6과 같고, 자동차는 반기별 8,1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의 오염유발계수는 별표4와 같고, 연료계수·차종별 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및 차령계수는 별표7과 같다.
		제16조(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대한 개선부담금의 산정방법) 동일 시설물내에서 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내에서 2이상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의 종류별로 연료 사용량에 단위당부과금액과 연료계수 및 지역계수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개선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동일 시설물안에서 연료사용량의 측정이 가능한 연료와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의 사용량은 당해 시설물의 총표준연료사용량에서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사용량을 빼서 산정한다.</p> <p>제17조(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의 적용방법) ①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로서 용도별 용수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와 표준용수사용량 및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오염유발계수를 오염유발계수로 본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오염유발계수의 산정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18조(기타 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11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용도를 말한다.	제9조(평균오염유발계수의 산정방법)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 오염유발계수는 각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에 표준용수사용량 및 바닥면적을 곱하여 합산한 값을 각 용도별 표준용수사용량에 바닥면적을 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용자 및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의 지원 3. 자연환경보전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2.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3.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4.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5. 기타 환경처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2조(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 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 "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p>제19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사업실시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범위 안에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조사비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장비비 사무관리비 기타 부대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있는 경우 그 이자를 포함하고, 당해 사업의 실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해 사업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하는 때에 얻어지는 총 수입금을 뺀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원인자의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총액)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서 방지사업의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이하 "방지사업부담금"이라 한다)은 각 원인자의 당해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방지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외의 자가 이용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 방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만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체원의 충당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지사업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정도 등을 기준으로하여 이를 정한다.	제21조(원인자별 비용부담액 결정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비용부담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업활동이 당해 방지사업과 관계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그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방지사업부담금의 총액을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오염물질처리비용 4. 사업의 종류 5. 자본금·종업원수·연간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감안한 사업규모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방지사업부담금 부과징수절차 등) 시행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 금액·납부기간·납부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방지사업의 종류)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방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제23조(기타 방지사업의 종류)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2. 공장 또는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녹지의 형성, 중앙열공급시설 및 공공용 녹지의 설치와 그 관리사업 3.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된 농경지·어장, 산림 또는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객토·삭토·복토·준설사업, 토양개량제사용사업, 산림 또는 농업용 시설개축사업 4. 특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배수설비 등 시설의 설치사업 5.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 6. 기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방지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사업의 일부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3. 오염하천정화를 위한 퇴적오너준설사업 및 오·우수분리관거의 설치사업 4. 오염이 심한 연안해역의 퇴적오너준설사업. 다만, 항만의 개발준설사업 및 유지준설사업을 제외한다. 제24조(방지사업의 위탁시행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단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위탁요율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계획승인의 신청) ① 시행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지사업실시의 필요성 2. 방지사업의 종류 3. 시설용량·설치면적·총소요사업비 등 방지사업의 규모 4.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5.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기준 6. 예상원인자의 범위 7.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8. 연차별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방지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5호에 의한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기준은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환경처장관)는 제16조에서 같다)가 방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종류·규모·사업지역·사업비, 예상원인자의 범위, 사업효과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계획의 중요사항) 법 제1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25이 상에 해당하는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두는 비용부담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업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비 2. 원인자의 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3. 사업지역(변경되는 사업지가 동일 읍·면·동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비용부담계획) ① 시행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 시행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계획승인신청서에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지사업 총소요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시기 7.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사업계획의 고시) 환경처장관이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 2.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 3. 사업계획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4.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13조(사업계획서의 열람) ①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을 때에는 이를 30일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만료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 서식)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승인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	제26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25조각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 사항을 기재한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승계) 방지사업부담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전에 이 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발생한 방지사업비용부담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8조(수용·사용) ① 시행자는 방지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선부담금 등의 납입)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 한다)은 환경관리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강제징수) ① 환경처장관 또는 시행자는 개선부담금과 방지사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자가 납부기간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자가 그 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환경관리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부담금의 징수위탁) ① 환경관리공단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방지사업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담자의 성명·주소·부과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징수위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자체없이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등) 시행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방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처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2.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 ② 환경처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지방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2조(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등 적용시기)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기계획에 대한 연차별세부추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환경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환경오염방지사업은 이 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본다.	제3조(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제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부과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조를 삭제한다. 2. 부칙 제3조 단서중 “및 동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②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8조 제1호 중 “환경보전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받은”으로 한다. 2. 제8조의 2 제2호 중 “환경보전법 제43조”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별표

[별표 1] 부과대상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제4조 제2항 관련)

구분	용 도	규 모
1	가. 위탁시설 중 일반유홍음식점(전문음식점, 간이 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무도유홍 음식점, 외국인전용유홍음식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 제2종 균린생활시설중 대중음식점	160m ² 이상
2	가. 제2종 균린생활시설중 실내수영장 나.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다. 제2종 균린생활시설중 암마시술소 라.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240m ² 이상
3	가. 관람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나. 전시시설중 전시장, 동·식물원 다. 판매시설중 상점 라. 제1종 균린생활시설중 수퍼마켓·일용품등의 소매점	270m ² 이상
4	가.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나. 의료시설중 병원, 격리병원 다. 제1종 균린생활시설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라. 교육연구시설중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소,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도서관	380m ² 이상
5	가. 위탁시설중 무도장·무도학원 및 노래연습장 나. 위탁시설중 특수목욕장·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 제1종 균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세탁소 라.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	410m ² 이상

비고 : 1.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2. 위표는 사업자별·용도별로 구분하여 규모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2] 개선부담금의 경감대상 법인·단체(제7조 관련)

-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한 지방문화사업자 및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대한교원공제회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
-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무원 및 사립

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진흥공단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 전산망보급화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터 및 한국전산원
-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료기관에 한한다)
-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
-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생생보호법에 의한 생생보호회
-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별표 3]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제8조 제1항 관련)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년도 2월 16일부터 2월 말일까지

[별표 4] 시설물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제12조 제2항 및 제15조 관련)

용 도	수질오염 유발계수	표준사용량(반기)	
		연료사용량 (ℓ/m ²)	용수사용량 (톤/m ²)
1. 제1종 균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1.29	0.95	1.00
나. 일반목욕장	0.12	60.00	26.30

용도	수질오염 유발계수	표준사용량(반기)	
		연료사용량 (ℓ/m ²)	용수사용량 (톤/m ²)
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침술원·집골원·조산소	0.34	2.00	2.76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대중음식점	0.55	8.25	5.76
나. 안마시술소	0.15	30.00	13.15
다.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 증개업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 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0	2.10	0.70
라. 실내수영장	0.07	30.00	20.60
3. 의료시설	0.34	2.00	2.76
4. 교육연구시설			
가. 과학기술연구소	0.34	2.00	1.38
나. 교육원	0.67	2.00	1.38
다. 기타 교육연구시설	0.67	4.00	2.76
5. 운동시설			
가. 체육관	0.67	4.00	2.76
나. 실내수영장	0.07	30.00	20.60
6. 업무시설, 근린공공 시설, 방 송·통신시설, 동물관련시설	1.00	2.10	0.07
7. 숙박시설	0.38	4.23	3.56
8.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소매시장	1.29	1.90	2.00
나. 상점	1.29	0.95	1.00
다. 해산물 도소매 공동판매장	0.65	1.90	2.00
9. 위락시설			
가. 일반유홍음식점·무도유홍 음식점·외국인전용유홍음식점	0.55	8.25	5.76
나. 특수목욕장	0.20	60.00	26.30
10.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영화관 제외), 집회 장	1.29	0.63	0.67
나. 공연장중 영화관	1.29	1.90	2.00
11. 전시시설	1.29	0.63	0.67
12. 운수시설			
가. 화물터미널	0.67	2.00	1.38
나. 기타 운수시설	0.67	4.40	2.76
13. 관광휴게시설			
가. 휴게소	0.85	6.60	2.00
나. 기타 관광휴게시설	0.85	2.20	0.67
1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묘지관련시설	0.85	2.20	0.67
15. 기타시설(비고2에서 정하는 용도는 제외한다)	0.85	2.10	0.70

비고 1. 시설물의 용도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2. 부과면제대상용도에 대한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가. 단독주택·공동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청소년시설: 숙박시설
 나.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중 집회장

[별표 5] 액체연료환산계수(제13조 관련)

연료종류	LNG (Sm ³)	LPG (kg)	경유 (ℓ)	중유 (ℓ)	무연탄 신탄(kg)	유연탄 (kg)
환산계수	1.14	0.76	1	1.08	0.49	0.72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료는 위표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연료환산계수를 적용한다.

[별표 6]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기준부과금액
(제14조 제2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구분	액체환산연료사용량 (ℓ/반기)	기준부과금액 (원/ℓ)
1	1,000이하	13
2	1,000초과~ 2,000까지	15
3	2,000초과~ 4,000까지	16
4	4,000초과~ 6,000까지	18
5	6,000초과~ 10,000까지	20
6	10,000초과~ 20,000까지	22
7	20,000초과~100,000까지	24
8	100,000초과~600,000까지	27
9	600,000초과	29

2.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구분	용수사용량 (톤/반기)	기준부과금액 (원/톤)
1	400이하	79
2	400초과~ 800까지	87
3	800초과~ 1,600까지	97
4	1,600초과~ 2,400까지	108
5	2,400초과~ 4,000까지	120
6	4,000초과~ 8,000까지	132
7	8,000초과~ 40,000까지	145
8	40,000초과~240,000까지	160
9	240,000초과	176

[별표 7] 개선부담금의 부과계수(제15조 관련)

1. 연료계수

연료 종류	LNG, LPG	경유			중유			무연탄 신탄
		저유황 (0.2%이하)	자유황 (0.2%초과 0.4%이하)	고유황 (0.4%초과 1%이하)	저유황 (1%이하)	자유황 (1%초과 1.6%이하)	고유황 (1.6%초과 4%이하)	
연료 계수	0.16	0.87	1.00	1.40	1.62	2.03	3.67	3.67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연료는 위표 연료중 가장 유사한 연료의 액체연료환산계수를 적용한다.

2. 차종별 오염유발계수

엔진총배기량(cc)	오염유발계수
2,000이하	1.00
2,000초과~2,500이하	1.25
2,500초과~3,500이하	1.75
3,500초과~6,500이하	2.64
6,500초과~10,000이하	4.50
10,000초과	5.00

3. 지역계수

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시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비고 :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높은 지역 계수를 적용한다.

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시지역
지역계수	2.07	1.00	0.68	0.67

비고 :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높은 지역 계수를 적용한다.

다. 자동차

지역별	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지역
지역계수	1.53	1.00	0.97	0.79	0.40

비고 : 해당지역계수가 2이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높은 지역 계수를 적용한다.

4. 차령계수

차령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4	1.16	1.18	1.20	1.22	1.24	1.26	1.28	1.30

◎ 환경처고시 제1992-54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9월 15일

환경처장관

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

일련번호	물질명	심사결과
'92-11	4,6-디클로로-2-페닐파리미딘 4,6-Dichloro-2-phenylpyrimidine : Fenclorim [3740-92-9] C ₁₀ H ₈ Cl ₂ N ₂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12	3,5,6-트리클로로-2-파리딜옥시아세트산 2-부톡시에틸 에스테르 3,5,6-Trichloro-2-phridyloxyacetic acid 2-butoxyethyl ester : Triclopyr butoxyethyl ester [64470-88-8] C ₁₃ H ₁₆ Cl ₃ NO ₁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13	4,5-디클로로-2-N-옥틸-4-이소티아졸린-3-온 4,5-Dichloro-2-N-octyl-4-isothiazolin-3-one [64359-81-5] C ₁₁ H ₁₇ Cl ₂ NOS	○ 유독물에 해당안됨 ○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페인트 제조첨가용은 제외
'92-14	2-터트-부틸 4,5-디클로로-3-(2H)파리다이제스 2-tert-Butyl 4,5-dichloro-3(2H)pyridazine : TDCP [84956-71-8] C ₈ H ₁₆ Cl ₂ N ₂ O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15	P-터트-부틸 벤질티울 P-tert-Butyl benzylthiol : TBSH [49543-63-7] C ₁₁ H ₁₆ S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16	2-메틸 프로판알 2-Methyl propanal : Isobutyl aldehyde [78-84-2] C ₄ H ₈ O	○ 유독물에 해당안됨 ○ 1994. 12. 31. 까지 발암성 자료를 제출하여 유해성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것
'92-17	(RS)-[0-1-(4-클로로페닐)파라졸-4-일] 0-에틸 S-프로필 포스포로티오산 (RS)-[0-1-(4-Cylophenyl)pyrazol-4-yl]O-ethyl S-propyl phosphorothioate : Pyraclofos [77458-01-6] C ₁₄ H ₁₈ ClN ₂ O ₃ PS	○ 특정유독물에 해당됨 ○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금지, 다만 농약제조용 (35%수화제)은 제외
'92-18	2,2-디메틸 프로파온산 2,2-Dimethyl propionic acid ; Pivalic acid [75-98-9] C ₅ H ₁₀ O	○ 유독물에 해당안됨 ○ 1994. 5. 31. 까지 발암성 자료를 제출하여 유해성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것
'92-19	4,5,6,7,8,8'-헥사클로로-3a,4,7,7a-테트라하이드로-4,4-메탄오이소벤즈푸란-1,3,-디온 4,5,6,7,8,8'-Hexachloro-3a,4,7,7a-tetrahydro-4,4-methanoisobenzofuran-1,3-dione ; Chloreindic anhydride [115-27-5] C ₉ H ₂ O ₃ Cl ₆	○ 유독물에 해당안됨 ○ 페인트 제조용(2%이하 첨가)에 한하여 사용할 것 ○ 1994. 12. 31. 까지 발암성 자료를 제출하여 유해성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것

일련번호	물질명	심사결과
'92-20	테르라키스(2-에틸헥실)티탄산 Tetrakis(2-ethylhexyl) titanate [1070-10-6]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21	아세트알데하이드 옥심 Acetaldehyde oxime : Acetaldoxime [107-29-9] C ₂ H ₅ NO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22	[3-(2H-벤조트리아졸-2-일)-5-(1,1-디메틸에틸)-4-히드록시페닐]프로피온산 알킬(C=7-9, 선형 또는 가지형)에스테르의 혼합물 Mixture of branched and liner alkyl(C=7-9) ester of [3-(2H-benzotriazol-2-yl)-5-(1,1-dimethylethyl)-4-hydroxyphenyl]propionic acid [127519-17-9] C ₂₇ H ₃₇ N ₃ O ₃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23	2-벤질-2-디메틸아미노-1-(4-모포리노페닐)-부탄-1-온 2-benzyl-2-dimethylamino-1-(4-morpholinophenyl)-butan-1-one [119313-12-1] C ₂₃ H ₃₁ N ₂ O ₂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24	4-아미노-3,5-디클로로-6-플루오로-2-파리딜옥시아세트산 1-메틸헵틸에스테르 4-amino-3,5-dichloro-6-fluoro-2-pyridyloxyacetic acid 1-methylheptyl ester : Fluroxypyr-meptyl [81406-37-3] C ₁₅ H ₂₁ Cl ₂ FN ₂ O ₃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25	2-(4-이소프로필-4-메틸-5-옥소-2-이미다졸린-2-일 니코틴산 2-(4-Isopropyl-4-methyl-5-oxo-2-imidazolin-2-yl) nicotinic acid : Imazopyr [81334-34-1] C ₁₃ H ₁₅ N ₃ O ₃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26	히드록시 디노닐 벤젠су阜산 암보늄염 Hydroxydinonyl benzenesulfonic acid ammonium salt [59379-70-3] C ₂₁ H ₃₅ O ₃ S · NH ₃	○ 유독물에 해당안됨

일련번호	물질명	심사결과
'92-27	포름알데하이드와 N-(2-아미노에틸)-1,2-에탄디아민의 중합체의 벤질화물 Formaldehyde polymer with N-(2-aminoethyl)-1,2-ethanediamine, benzylated [70750-07-1]	○ 유독물에 해당안됨
'92-28	[총칭명] 치환된 나프탈렌 디솔폰산의 나트륨염 Sodium salt of substituted naphthalene disulfonic acid	○ 유독물에 해당안됨

◎ 환경처고시 제1992-55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제432호 및 제3조[별표2] 제9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및 특정유독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년 9월 15일

환경처장관

• 유독물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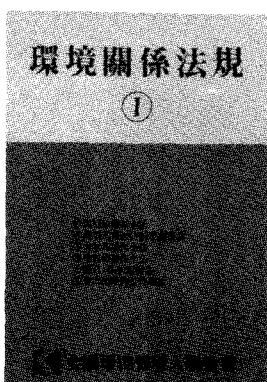
지정번호	물질명
432	(RS)-[O-1-(4-클로로페닐)파라졸-4-일] O-에틸 S-프로필 포스포로티오산 (RS)-[O-1-(4-Chlorophenyl)pyrazol-4-yl] O-ethyl s-propyl phosphorothioate : Pyraclofos [77458-01-6] C ₁₄ H ₁₈ ClN ₂ O ₃ PS

• 특정유독물 지정

99	(RS)-[O-1-(4-클로로페닐)파라졸-4-일] O-에틸 S-프로필 포스포로티오산 (RS)-[O-1-(4-Chlorophenyl)pyrazol-4-yl] O-ethyl s-propyl phosphorothioate : Pyraclofos [77458-01-6] C ₁₄ H ₁₈ ClN ₂ O ₃ PS
----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관계법규(I)발행

본연합회에서는 수질,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관계법규(I)을 새로 발행했습니다.

◀ 환경관계법규(I)
<4×6배판, 730쪽, 정가 15,000 원>

신간안내